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목 차>

### 1. 식품접객업소 가격 미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손익재
	담당부서 (과)	식품안전정책과		직급	식품위생주사
	국장	최종동		연락처	043-719-2014
	과장	최종동		이메일	sij0301@mail.go.kr

2026. 02. 19. 작성

식품안전정책국장 직무대리      최종동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식품접객업소 가격 미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2.규제조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9조								
	3.위임법령	식품위생법 제 7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3.04~2026.04.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최근 성수기, 대규모 행사기간(축제 등) 중 음식점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언론이슈가 발생하고,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등 음식점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함</p> <p>※ “고기 섞었다고 2000원 더” 광장시장 순대 바가지...(연합뉴스, '25.11.5)</p> <p>’ 해삼 한 접시 7만원 ‘ 횃집, 가격표 미게시로 ’ 과태료 60만원 ‘(국민일보, ’ 25.9.2)</p> <p>○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 중 가격표 게시 의무 및 가격표 대로 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으로 처분의 실효성이 낮았음</p> <p>○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 중 가격표 관련 규정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가격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p>								
	7.규제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미게시하는 경우나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1차 시정명령 → 1차 영업정지 5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휴게음식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 *</td> <td>959,688개소</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휴게음식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 *	959,688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휴게음식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 *	959,688개소							
9.규제목표	○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가격표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23] 행정처분 기준 II 제3호 표의 제16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td> <td style="width: 10%; padding: 5px;">법 제 7 1 조 및 법 제75조</td> <td style="width: 10%; padding: 5px;">시정 명령</td> <td style="width: 10%; padding: 5px;">영업 정지 7일</td> <td style="width: 10%; padding: 5px;">영업 정지 15일</td> </tr> </table>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 7 1 조 및 법 제75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p>[별표23] 행정처분 기준 II 제3호 표의 제10호가목</p> <p>14) 별표17 제7호아목을 위반한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14) 별표 17 제7호아목을 위반한 경우</td> <td style="width: 10%; padding: 5px;">영업 정지 5일</td> <td style="width: 10%; padding: 5px;">영업 정지 10일</td> <td style="width: 10%; padding: 5px;">영업 정지 20일</td> </tr> </table>	14) 별표 17 제7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 7 1 조 및 법 제75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14) 별표 17 제7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최근 대규모 행사 기간(축제), 성수기 특정 기간 동안 음식점 등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

- 음식점 등에서 바가지요금 관련 언론 이슈(유튜버 포함)로 행사 자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어 성공적인 행사 어려움

※ 현장 사례

▶ 서울 광장시장 8천원 순대 주문 → 상인이 임의로 고기 섞어 1만원 계산 (25.11.4. '유튜브 이상한과자가게')

▶ "5만원 치킨인데 55만원 결제"...K바가지에 날벼락(25.4.14. 세계일보)

○ **(문제점)** 식품접객업소의 가격을 미표시하거나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낮은 제재로 자발적 준수 유도가 미흡

○ **(정부개입 필요성)** 일부 음식점에서 바가지 요금 등으로 행사 자체 신뢰도가 저하되고, 음식점 가격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제재 수준이 낮아 실제 단속을 통한 실효성도 낮아 문제가

-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불심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함

▪ 「식품위생법」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7. 아. 위반한 경우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로 적용

\*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가격표시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1차 시정명령 → 1차 영업정지 5일)하는 규정 검토가 필요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유지
	내용	현행대로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 미게시하거나 가격표대로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적용
규제대안1	대안명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내용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하거나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용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현행 기준과 동일하여 별도의 규제 발생하지 않음	·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처분 수준 낮아 자발적 준수 유도 미흡
규제대안1	· 식품 접객업소 가격표 게시 등 관련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분 강화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보장 강화	·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이 커짐

###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게시 등 관련 처분 규정 강화를 통해 가격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현행을 유지할 경우, 가격 표시 미준수에 대한 처분 수준이 낮아 규정은 자발적인 준수 유도가 미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대안1)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학계, 산업계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	--	--	--

### 3. 규제목표

-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시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통해 음식점의 가격표시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권리 보장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이 가능함
- 음식점 가격표 게시 및 가격표 대로 요금을 받는 규정 강화를 통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대규모 행사 및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나아가 K-FOOD의 위상도 올라가면서 매출 상승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게시 등 가격표시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음식점의 위생 관리와 더불어 가격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음식점 가격표시 관련 규정 위반시 처분을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경우, 가격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영업자의 심리적 억지력을 확보하여 특정지역 및 특정시기에 급격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바가지 요금 등의 근절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정확하게 게시하고, 또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권리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써 최소한의 필요 규제임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은 중소기업(소기업)으로 분류됨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별표1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함.
- 해당 규제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업체 규모에 고려한 규제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낮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 근거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통계를 활용한 예비분석모델 적용
④ 대상 업종	휴게음식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소
⑤ 예비분석내용	본 규제는 가격표 게시 의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이해 강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프랑스) 소비자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가격정보제공 의무 위반시 최대 3천유로(개인)/1.5만유로(법인) 벌금 부과 + 기만적 상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2년의 형사처벌 가능
- (독일) 가격표시령에 근거하여 가격표시 의무 위반시 최대 2.5만유로 까지 벌금 부과 가능

#### ○ 타법사례

- 범부처 ‘바가지 요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타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적용 예정

【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

품목	위반사항(법령, 주무부처)	위반시 조치사항	
		현행	개선(안)
음식	요금표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위반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약처)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숙박	요금표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복지부)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가격표 미게시하거나 가격표 대로 요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 하는 것으로 규제준수 부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규제 강화 후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 미게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강화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만 가능성 존재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존재하고,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규제사항에 대한 집행 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6.3. 예정)
-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협회,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 송부하여 의견수렴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 영업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지도·점검 등 실시

### 3. 종합결론

- 최근 성수기 관광지 주변이나 대규모 행사(축제 등) 중 음식점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언론 이슈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신으로 행사 자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
-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게시 의무는 위생관리 만큼이나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임
- 이에 따라, 음식점의 가격표 게시 등 가격표시의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영업자의 심리적 억지력을 확보하여 급격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 바가지 요금 근절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필요성, 규제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동 규제의 강화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